

성형외과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 사례집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 외과

의료분쟁 사례집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

발행일 2016년 8월

발행인 박국수

기획·편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교육연구팀

감수 및 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이윤희 비상임감정위원

자문 박영진 비상임감정위원 (성형외과 전문의)
백룡민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임성규 비상임감정위원 (변호사)
조윤미 비상임감정위원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디자인 OPENcommunication

인쇄 Jihoo C&P

발간사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의료중재원은 높은 상담만족도와 90%를 넘는 조정성립률 등의 성과를 이루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30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사망 등 일부 중한 의료사고인 경우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 될 예정이어서 제도의 혜택을 보는 국민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등의 주요업무와 더불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2015년 의약품 피해 사례집에 이어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급속한 시대 변화에 맞춰 성형이 일반화, 대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까지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며, 그에 따르는 크고 작은 의료분쟁의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의료중재원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형외과 사례집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건들을 신체 부위별, 성형 목적별로 나누어, 사건의 의학적 판단 내용과 법률적 검토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의료사고 예방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이 환자에게 성형 부작용과 후유증, 사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인에게 사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지식을 전달하여, 상호분쟁과 불신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의료사고 예방책을 연구·공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의료중재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박국수

CONTENTS

I 성형외과 조정중재 현황

01. 일반 현황	6
02. 세부 현황	8

II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

01. 의료분쟁 사례 - 눈	14
02. 의료분쟁 사례 - 코	23
03. 의료분쟁 사례 - 안면	29
04. 의료분쟁 사례 - 가슴	37
05. 의료분쟁 사례 - 전신	42
06. 비수술방법 - 필러, 보톡스 등	44
07. 기타 의료분쟁 사례- 재건목적 등	49

III 성형외과 의료분쟁 예방 시사점

01. 성형외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환자	54
02. 성형외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의료기관	56
03. 성형외과 의료분쟁 법률적 해석	58
별첨 1. 미용성형수술 및 시술 점검목록	62
별첨 2. 관련 용어	66

성형외과

조정종재

현황

I

1. 일반 현황
2. 세부 현황

일반현황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추이

지난 4년('12. 4월~'15년)간 의료중재원에서 진행된 상담 중 성형외과와 관련된 의료분쟁은 전체 상담 건수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음.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조정신청으로 접수된 건수는 전체 접수 건수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되는 추세임.

■ 연도별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상담건수(전체)	8,826	11,308	12,045	9,650	41,829
상담건수(성형외과)	444 (5.0)	733 (6.5)	808 (6.7)	685 (7.1)	2,670 (6.4)
접수건수	18 (4.1)	51 (7.0)	88 (10.9)	91 (13.3)	248 (9.3)

('12. 4월 ~ '15년 접수 기준, 단위: 건, %)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신청 소요기간 추이

지난 4년('12. 4월~'15년)간 접수된 성형외과 의료분쟁에서 “해당 진료행위 발생일”로부터 “의료분쟁 조정신청일”까지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의 58.0%(144건)가 “사고발생 6개월 이후”에 조정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사고발생일로부터 조정신청까지 평균 약 11개월(31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고 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소요기간 현황

구 분	1주일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24개월 초과	계
접수건수	3 (1.2)	12 (4.8)	42 (16.9)	47 (19.0)	61 (24.6)	61 (24.6)	22 (8.9)	248 (100.0)

('12. 4월 ~ '15년 접수 기준, 단위: 건, %)

성형외과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신청 현황

지난 4년('12. 4월~'15년)간 접수된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건을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 201건(81.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 19건(7.7%), “병원” 16건(6.5%), “종합병원” 12건(4.8%) 순으로 나타남.

■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신청 현황

구 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계
접수건수	19 (7.7)	12 (4.8)	16 (6.5)	201 (81.0)	248 (100.0)

('12. 4월 ~ '15년 접수 기준, 단위: 건, %)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건의 조정개시율은 약 45.2%

지난 4년('12. 4월~'15년)간 접수된 의료분쟁 248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총 112건(45.2%)임.

접수 건수 및 조정 개시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개시 현황

구 분	조정개시율	접수	조정개시	취하	각하
2012년	50.0	18	9	-	9
2013년	41.2	51	21	-	30
2014년	46.0	88	40	1	47
2015년	46.7	91	42	-	49
전 체	45.2	248	112	1	135

('12. 4월 ~ '15년 접수 기준, 단위: 건, %)

세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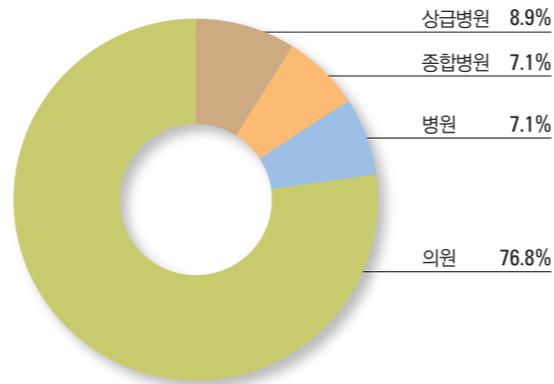
이하에서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112건을 대상으로 함. (이하 성형외과 조정개시사건으로 표기)

성형외과 의료분쟁은 주로 “의원”에서 많이 발생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86건(76.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 10건(8.9%), “종합병원” 8건(7.1%), “병원” 8건(7.1%) 임.

■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 의료기관 종별 현황

구 분	개시건수
상급종합병원	10 (8.9)
종합병원	8 (7.1)
병원	8 (7.1)
의원	86 (76.8)
계	112 (100.0)



(‘12. 4월 ~ ‘15년 개시 기준, 단위: 건, %)

연령대 및 성별로는 “20-30대 여성” 환자에서 주로 발생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을 사고발생일 기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30대 여성 환자에서 주로 발생함.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여성에서는 20대가 23건(20.5%), 30대가 22건(19.6%) 순으로 각각 발생하였으며, 남성

에서는 50대가 8건(7.1%), 20대 및 30대가 각각 6건(5.4%) 순으로 발생함.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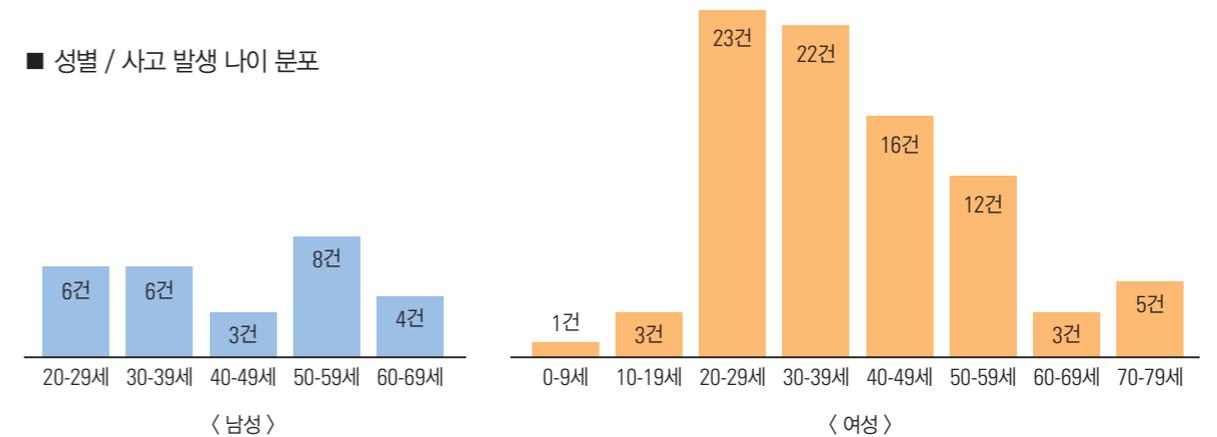
■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 성별·연령대별 현황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계
남	-	-	6 (5.4)	6 (5.4)	3 (2.7)	8 (7.1)	4 (3.6)	-	27 (24.1)
여	1 (0.9)	3 (2.7)	23 (20.5)	22 (19.6)	16 (14.3)	12 (10.7)	3 (2.7)	5 (4.5)	85 (75.9)
계	1 (0.9)	3 (2.7)	29 (25.9)	28 (25.0)	19 (17.0)	20 (17.9)	7 (6.3)	5 (4.5)	112 (100.0)

※ 연령대는 사고발생일의 환자 기준임.

(‘12. 4월 ~ ‘15년 개시 기준, 단위: 건, %)

■ 성별 / 사고 발생 나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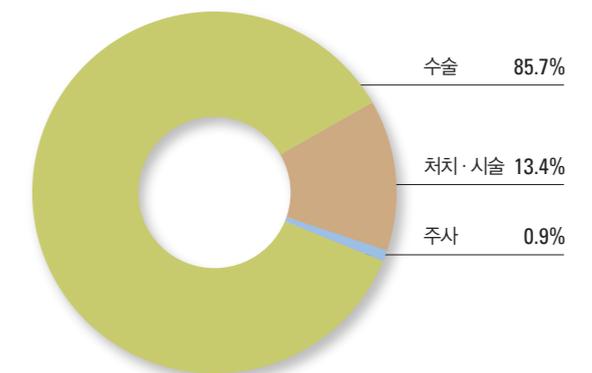


의료행위 별로는 수술이 96건(85.7%)으로 가장 많이 발생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을 의료행위 별로 분류하면 “수술” 96건(85.7%), “시술·처치” 15건(13.4%), “주사” 1건(0.9%)로 나타남.

■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 의료행위별 현황

구 분	개시건수
수술	96 (85.7)
처치·시술	15 (13.4)
주사	1 (0.9)
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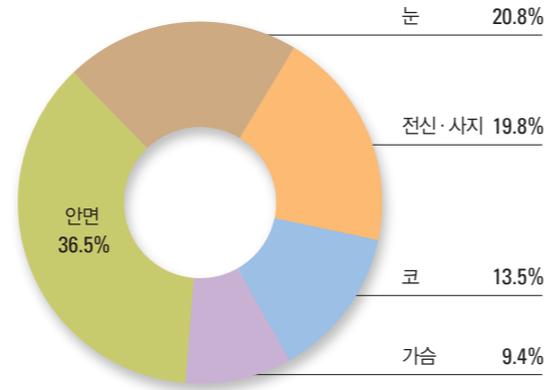


(‘12. 4월 ~ ‘15년 개시 기준, 단위: 건, %)

수술 96건을 신체 부위로 나누어보면 안면 부위 성형수술이 35건(36.5%)으로 가장 많았음.

■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 중 수술의 신체부위별 현황

구 분	개시건수
안면	35 (36.5)
눈	20 (20.8)
전신·사지	19 (19.8)
코	13 (13.5)
가슴	9 (9.4)
계	96 (100)



※ 주요 쟁점 사건 기준 ('12. 4월 ~ '15년 개시 기준, 단위: 건, %)

■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 중 수술의 신체부위별 시술법별 현황

신체부위	상세	건수	신체부위	상세	건수
안면	안면거상술	8	눈	하안검	9
	광대 성형술	7		쌍꺼풀	8
	턱 수술	7		눈매성형 ²⁾	3
	지방이식술	5	전신·사지	재건술	14
	재건술	4		지방흡입술	3
	안면윤곽술	3		액취증 수술	2
	안면윤곽술	3	코	용비술	13
	모발이식	2		재건술	2
기타 ¹⁾	2	가슴	유방확대술	7	
			유방축소술	2	

※ 중복 포함 (예 : 코수술과 안면수술 동시 시행, 가슴성형과 안면성형 동시 시행 등)

('12. 4월 ~ '15년 개시 기준, 단위: 건)

1) 안면 - 기타 : 인종교정술, 구개인두 교정술 등
2) 눈 - 눈매성형 : 상안검거근 중첩술, 앞트임, 뒤트임 등

처치 및 시술건은 보톡스 및 필러가 10건(64.3%)으로 나타남.

■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 중 처치·시술 현황

구 분	보톡스·필러	레이저	기타	계
개시건수	10 (64.3)	4 (28.6)	1 (7.1)	15 (100)

('12. 4월 ~ '15년 개시 기준,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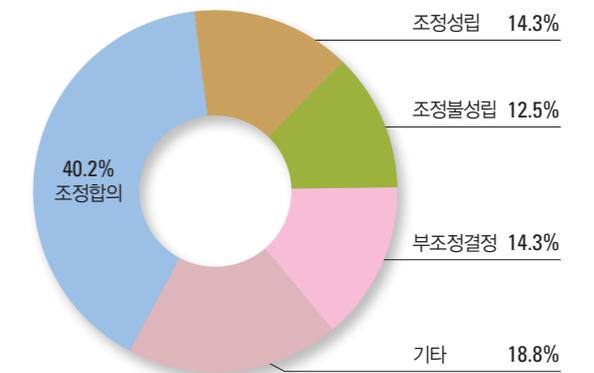
조정합의 또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사건은 54.5%

지난 4년('12. 4월~'15년)간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의 종결 현황을 분석하면 “조정합의” 45건(40.2%), “조정성립” 16건(14.3%)으로 54.5%가 원만히 해결되었음.

■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조정건수	
조정합의	45 (40.2)	
조정결정	조정성립 ³⁾	16 (14.3)
	조정불성립 ⁴⁾	14 (12.5)
부조정결정 ⁵⁾	16 (14.3)	
기타(취하, 각하 등)	21 (18.8)	
계	112 (100)	

('12. 4월 ~ '15년 개시 기준, 단위: 건, %)



3) 조정성립 : 조정부가 합리적인 합의수준에 대해 조정결정을 권고하며, 이 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4) 조정불성립 : 조정성립의 반대의 경우로,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의 할 경우

5) 부조정결정 : 신청인의 조정내용에 이유 없거나, 사건의 성질상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금은 "500만원 이하" 구간이 50건(66.7%)

지난 4년('12. 4월~'15년)간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 중 배상책임이 인정된 건을 분석하면 “500만 원 이하”가 50건(66.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평균 배상액은 약 800만원이고, 최고 배상액은 1억 2,000만원

■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 배상결정 금액 현황

구 분	0원	0원 초과 ~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계
조정건수	1 (1.3)	50 (66.7)	15 (20.0)	3 (4.0)	6 (8.0)	75 (100)

(‘12. 4월 ~ ‘15년 개시 기준, 단위: 건, %)

■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 배상결정 금액 중 500만원 이하 건 상세 현황

구 분	0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00원 초과 ~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계
조정건수	17 (34)	9 (18)	11 (22)	9 (18)	4 (8)	50 (100)

(‘12. 4월 ~ ‘15년 개시 기준, 단위: 건, %)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

II

1. 의료분쟁 사례 - 눈
2. 의료분쟁 사례 - 코
3. 의료분쟁 사례 - 안면
4. 의료분쟁 사례 - 가슴
5. 의료분쟁 사례 - 전신
6. 비수술방법 - 필러, 보톡스 등
7. 기타 의료분쟁 사례- 재건목적 등

2012. 4월부터 2015. 12월까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처리 완료된 성형외과 사건 중 주요 사례를 발췌하여 소개함.

양 당사자 간 합의된 사건은 증거 법칙에 따른 엄밀한 사실 인정과 법률 관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잣대만을 이용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닌,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맞추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의학적·법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양 당사자는 자발적인 의사 결정에 의한 상호 양보를 통하여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향하는 조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상호 합의에 의한 결과임을 밝힘.

본 사례집에 수록되어 있는 조정신청금액, 합의 및 성립금액 등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분쟁에 특유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당사자, 구체적 사고 내용 및 사건을 둘러싼 당사자의 사정과 입장 등이 동일하지 아니한 다른 의료분쟁에는 그대로 원용될 수 없음을 밝힘.



1 반복된 쌍꺼풀 수술 후 비대칭 및 기능이상 발생

사건개요

신청인(의료기관)은 해당 쌍꺼풀 수술을 시행한 기관으로 최종 수술 이후 쌍꺼풀의 비대칭 결과를 인정하나, 현재는 회복기간(접수시점은 최종 수술 후 4개월)이므로 향후 상태 호전이 예상됨. 일정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환자의 요구사항과 조율이 되지 않아 조정신청함.

피신청인(환자)은 눈매교정을 위해 1차 양안 눈매성형술(상안검거근 중첩술 등)과 앞트임 수술, 약 30일 뒤 2차 좌측 쌍꺼풀 앞쪽 라인 교정술, 약 140일 뒤 3차 우안 눈매성형술(상안검거근 중첩술 등) 및 앞트임수술 받았으나, 양안 비대칭, 앞트임 흉터, 수술 후 기능 이상 (눈이 잘 안 떠지고 감기 힘들) 등을 호소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1) 1차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양측 쌍꺼풀의 비대칭은 수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술 전 피신청인이 가지고 있던 양쪽 눈의 수

평 길이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이 시술한 눈매성형술(상안검거근 중첩술 등)과 앞트임은 적절한 술기라고 판단됨.

2) 2차 수술의 적절성

시점) 일반적으로 동일한 부위의 재수술은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시행하나, 절대적인 기간이 아니고, 필요시 수술 후 3개월째에 재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술의 범위에 따라서 더 단기간 내에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음.

술기) 2차 수술은 높아진 좌측 쌍꺼풀을 낮춰주기 위한 변칙적 수술이라고 판단됨. 피신청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수술을 시행했으므로 수술의 목적부분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3) 3차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우측 안은 3차 수술 전보다 악화된 상태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법률적 검토 |

눈매성형술(상안검거근 중첩술 등)의 경우 재수술 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여러 차례 재수술을 시행하면서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수술 전보다도 악화된 모양과 눈을 뜨고 감을 때의 불편감 등의 합병증을 겪게 하였고,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신청한 건으로, 피신청인(환자)에게 5백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

조정결정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결정함.

2 눈 밑 지방제거술 후 하안검 함몰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이 눈 밑 지방 제거 수술 전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눈 밑 지방을 너무 과다하게 제거하여 눈 밑 지방이식 추가로 받아야함을 호소하며 조정신청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사전검사 시행 적절성 여부 일반적으로 미용수술은 진단에 대한 검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힘들며, 수술 전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가 있어도 모든 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도의의 경험과 수술계획에 따라 취사선택 할 수 있음.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수술 전 시행한 시진, 촉진 및 집어보기 검사(pinch test)는 수술 전 검사로 충분하였다고 판단됨.

눈 밑 지방제거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수술 전 신청인은 이미 하안검-협부 고랑이 관찰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 수술 및 소량의 지방이식 수술이 보다 적절한 수술이었을 수 있음. 그러나 미용수술의 경우 환자의 요구에 따라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의학적 논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눈 밑 지방 돌출만을 제거하기 원한다면 극소량의 눈 밑 지방 제거술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의 외양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눈 밑 지방 제거 수술 선택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이번 경우는 눈 밑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하였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에게 다른 수술 방법이나 눈 밑 지방 제거수술 후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도 신청인이 이와 같은 수술방법을 결정하였다는 정확한 의무 기록이 없음.

| 법률적 검토 |

일반적으로 눈 밑 지방 제거수술을 할 때 사전 검사를 필수적으로 모두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점, 미용목

적의 성형수술과 같은 경우 시진(視診)이 가장 중요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눈 밑 지방 수술 전 검사시행에 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

수술방법의 선택상의 문제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이 상이하나, 눈 밑 지방 제거 수술의 경우 소량의 지방제거를 하였을 경우 신청인의 눈 밑 지방 돌출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적절하였고, 수술방법의 선택상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감정결과와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은 눈 밑 지방 제거수술시 주의의무 소홀로 지방을 과다하게 제거함으로써 수술과정이 적절하지 못하였음.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기왕·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350만원을 청구함.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결정함.

3 눈 밑 레이저시술 받은 후 화상 발생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양측 눈 밑 흉터제거를 목적으로 레이저 박피술 받은 후 화상 및 흉반 발생 주장하여 조정 신청함.

피신청인(의료기관)은 화상이 아닌 박피술 후 동반되는 일시적 증상이라는 의견 제시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흉터 치료를 위하여 레이저 박피술을 시행할 수는 있으나, 눈가의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위임을 고려하면 시술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움. 장기간의 흉반 발생, 얇아진 피부, 모세혈관 관찰 등 후유증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후유증이 일시적 부작용이 아니며, 적정 강도보다 강한 시술로 인한 화상으로 판단됨.

시술 후 처치는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보이나 레이저 박피술에 대한 설명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에 있어 의무기록상 기재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술 전 동의서에도 존재하지 않아 설명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됨.

| 법률적 검토 |

본 레이저 시술이 절대 금기인 부위 및 사항은 아니므로, 시술 선택 상 과실을 논할 수 없음. 다만 1년이 경과한 지금도 붉은 증상이 지속되고 통상적인 경과관찰 기간이 지났음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갈변이나 흉반이라 볼 수는 없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의 특성과 레이저 박피술은 피부가 얇은 부위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주의의무 소홀로 레이저 강도를 지나치게 강하게 함으로써 화상을 입게 한 것이고, 시술동의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술방법과 특성,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사전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기왕·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1천만원을 청구함.

부조정결정 조정·중재 절차 진행 중 양당사자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부조정결정)함.

4 눈 성형 수술 기타 사례

1. 눈트임 수술(앞트임, 뒤트임 등) 후 안검외반증 및 결막염 발생

첫 시술 이후 최소의 경과관찰 기간이 필요하나, 환자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수일(2일 간격) 내에 총 5회에 걸친 반복된 재시술과 재봉합술을 되풀이한 것은 부적절함. 그 후에 나타난 결막염 및 반흔은 반복된 수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술 후 경과관찰 과실 인정된 사례

2. 눈 밑 지방이식술 후 안검외반증 발생하여 추가 수술 불가피함

신청인(환자)의 하안검 상태를 감안하여, 지방이식술은 적절한 수술방법이었으며, 의학감정 결과 지방이식술 후 일정기간 발생 될 수도 있는 외반증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현재 치유결과로 보아 봉합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악결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손해발생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는 사건으로 검토된 사례

3. 양측 쌍꺼풀 수술 후 한쪽눈 외상성 백내장 발생

신청인(환자)은 쌍꺼풀 수술 후에 외상성 백내장¹⁾ 진단받았으며, 좌측 안구에 대하여 제반 수술을 받은 원인은 쌍꺼풀 수술의 마취과정에서 외인성으로 수정체 손상이 발생하여,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 인정된 사례

1) 외상성 백내장 : 날카로운 상처에 의해 직접 또는 둔한 상처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정체 낭이 찢어졌을 때 수정체의 혼탁이 시작된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낭의 찢어진 곳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혼탁이 진행하고 닫히면 정지한다고 함. 전방은 알아지고 녹내장을 일으키는 수가 있음.(간호학대사전, 1996.3.1., 한국사전연구사)

관련 의학지식 - 쌍꺼풀 수술²⁾

| 시술정보 |

위 눈꺼풀 수술은 대부분 아래 눈꺼풀 수술과는 별도로 진행. 위 눈꺼풀수술은 눈꺼풀의 자연적인 주름에 눈꺼풀을 따라 절개하고 원치 않는 피부, 지방, 근육을 제거함. 쌍꺼풀을 만들어 고정하고, 절개부위를 봉합. 피부절제가 필요 없는 경우 절개부위를 최소화하는 부분절개나 매몰법을 사용함. 위 눈꺼풀의 수술에서 피부나 근육의 작은 부분을 제거할 수 있지만, 안륜근(눈꺼풀을 닫는 근육)이 최대한 보존되어야 함. 이 경우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하여 수술을 수행. 수술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당일퇴원이 가능함.

| 유의사항 |

개개인에게 적합한 시술하는 방법(절개법, 매몰법, 부분절개법(그림 참조), 내안각성형술(몽고주름제거술), 외안각성형술(뒤트임), 눈매성형술(상안검거근 중첩술) 등이 다양하므로,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과 충분한 고민 후 고려하여야함. 수술 받고자 하는 사람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쌍꺼풀의 모양과 수술법을 이해시킬 수 있는 숙련된 성형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수술회복 기간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임. 미용수술은 재수술이 더욱 힘들며, 시술 후 유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뒤따라야 함.

눈꺼풀 수술은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지만,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쉬는 게 좋음. 수술 후 냉찜질은 멍이나 붓기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멍은 개인차는 있지만 수일 내에 사라짐. 봉합사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 후 3~7일 사이에 제거. 실밥 제거 후 가벼운 세안과 화장은 가능하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흡연과 음주는 한 달 정도 삼가는 것이 좋음. 초기 부종에 의해 넓어진 쌍꺼풀 폭은 통상적으로 2~3개월 후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며, 쌍꺼풀 라인이 풀리지 않게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요함.

| 부작용 |

1) 일반적 부작용

가장 흔한 쌍꺼풀 수술 불만족 사항은 비대칭 쌍꺼풀이며 가장 엄중한 수술 부작용은 눈의 뒤쪽에서 발

생하는 출혈임 (안구후방혈종: retrobulbar hematoma). 쌍꺼풀 수술은 일시적인 시력장애, 감염, 흉터, 눈을 감지 못함, 안구건조, 쌍꺼풀, 비대칭, 풀림, 저교정, 과교정, 안검외반(눈꺼풀이 안구에 밀착되지 않고 일부가 바깥쪽으로 휘어 그 안쪽으로 결막이 노출된 상태), 결막부종(검은자 주위의 흰 부분인 구결막이 부풀어 오른 상태)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토안) 눈을 감을 때 윗 눈꺼풀이 아래 눈꺼풀 으로 쪽으로 따라 내려오지 못하여 눈이 완전히 감기지 못하거나 속눈썹이 위로 젖혀지는 경우(안검외반증 상태). 상안검거상근을 지나치게 끌어당기거나 안륜근 등 상안검 연부 조직의 과다 절제로 발생됨.

안검하수) 토안과는 반대로 과도하게 조직을 제거하다가 상안검거근에 손상을 주어 발생.

2) 심미적 불만족

흔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절개를 작게 하거나 덜 하면 흉터가 작아서 표시가 잘 안 날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옳지 않음. 예를 들어, 겉의 피부를 상안검판과 유착(붙임)시키거나 봉합사로 꿰매어 유착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수술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한 경우에, 눈을 감거나 아래를 볼 때 짙은 자리가 보일 수 있음. 쌍꺼풀이 안 풀리는 것에 집중하여 수술하는 경우에는, 쌍꺼풀 예정선 아래의 조직을 더 많이 제거하고 안검판과 강하게 밀착시키는 수술법을 택하게 되어,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부자연스런 부종이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현상 및 비가역성으로 눈을 뜨는 정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쌍꺼풀이 생길 수 있음.

절개법



디자인된 선을 따라 피부 절개



눈의 상태에 따라 피부, 근육, 결합조직을 적당량 제거 후 봉합



수술 후

2) 임태환 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성형외과학회, 미용성형시술 이용자 정보집(2013.12.31) : p. 15~ 16

코

1 코 성형 수술 후 비중격 만곡증 발생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휘어진 코와 길이 연장을 위하여 코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휘어진 코를 바로 잡지 않아 비염 발생 및 추가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게 되어 조정신청함.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신청인에게 미용목적으로 코끝이 슬림하면서 직선 모양을 위하여 비중격 연골을 사용한 연장수술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수술과 현재 환자의 비염발생과는 관련이 없다고 의견 제시함.

사건검토

본 성형수술은 근본적으로 짧은 코를 연장해 주기 위한 목적의 복합적 비성형술로 수술적응증은 적절하였음. 비중격 만곡에 의한 호흡곤란 및 코막힘 현상이 주된 증상으로 비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비중격 만곡은 수술과정 중 비중격 연골 제거 시 연골을 제거한 부위의 위치 선택이 부적절하여 시간이 경과되면서 연골을 제거한 비중격 부위의 비점막과 비강외측의 비점막간에 유착이 발생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기왕·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6백만원을 청구함.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합의함.

매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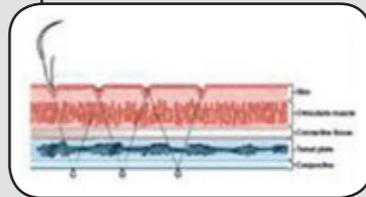
눈의 전체적인 상태를 고려해 쌍꺼풀라인을 디자인



디자인 된 선을 따라 두세개의 작은 구멍을 뚫은 후 고정 및 봉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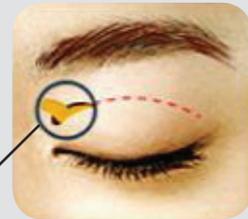
수술 후



부분절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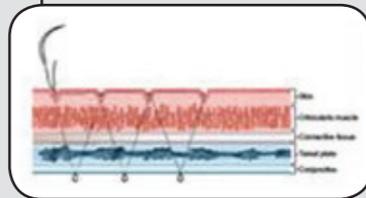
눈의 전체적인 상태를 고려해 쌍꺼풀라인을 디자인



만들어진 절개선으로 지방제거 후 근육 연결 및 봉합



수술 후



2 용비술 후 콧구멍 비대칭으로 재수술 필요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수술 전 화살코와 복코의 외양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용비술을 2차례 받았으나, 비대칭은 개선되지 않고, 코막힘 증상이 발생하여 조정신청함.

피신청인은 화살코, 복코 및 비대칭의 코를 가진 상태였고, 현저히 개선된 결과를 보였는바, 수술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음을 의견 제시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선택의 적절성 성형외과 영역의 수술방법은 술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본 환자와 같은 복코의 경우 어느 하나의 특정 수술방법만 있는 것이 아님. 이 사건의 경우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비확대술, 연골을 이용한 비첨 용기술 및 콧망을 이루고 있는 날개 연골을 서로 묶어 콧망울을 모아주는 수술 등을 시행하였고, 이후 발생한 콧구멍 비대칭에 대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수술방법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시술 과실 여부 2차례 수술 이후 신청인의 양측 비공 및 비익각이 비대칭이며, 비주 휘임 현상, 삽입된 연골이 축지되는 현상 등은 수술시 술기의 부족이나 비성형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코막힘 현상은 비주가 한쪽으로 휘어져 있고, 경도의 비중격 만곡 및 비점막 부종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현재 비주도 똑바르지 않고 삽입된 연골이 비주 부위에서 축지 되는 바 신청인의 상태는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기왕·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2천5백만원을 청구함.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합의함.

3 코 성형수술 중 기구로 인한 상처 발생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과거 두 차례 흰 코 및 매부리코에 대한 교정을 위해 교정비성형술을 받은 바 있음. 현재 코의 염증으로 구축(拘縮)³⁾ 현상이 생기고 코가 들리는 현상 발생, 수술 중 수술기구에 의해 인중에 찢어져서 반흔(흉터)이 남게 되어 조정신청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코가 들렸던 현상은 3차 수술로 교정이 되었으며, 수술 과정 중 인중 부위에 반흔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나, 반흔(흉터)의 예후 평가는 약 6개월 경과 후 논할 수 있다고 의견제시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신청인에게 발생한 인중의 상처는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발생됨. 성형수술의 경우 통상 6개월간 경과관찰을 한 다음 치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중의 상처는 치료 중이므로 반흔 잔존 여부에 대하여는 치료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법률적 검토 |

수술 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중에 상처를 발생시켰음이 인정됨. 다만 이후 상처에 대한 처치는 적절하였고, 치료는 추가 성형술이나 레이저 치료 등이 이용될 수 있음.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기왕·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6백만원을 청구함.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합의함.

3) 수동적(다른 사람이나 기계 또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절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제한되는 현상

관련 의학지식 - 코 성형 수술

| 시술종류 |

얼굴 중심을 구성하는 일부인 코의 성형수술은 동양인에게는 콧대를 높이는 용비술이 대표적임. 최근에는 사회·문화 및 경제적 요인의 다양화로 인하여 축비술이나 부분 코 교정술 등도 증가 추세에 있음. 일반적인 용비술은 자가조직, 동종보형물질, 이종 보형물질(합성보형물 : synthetic implant) 등 다양한 보형물을 활용하며, 코끝 성형수술을 동반하여 하는 경우도 많음. 이외에도 들창코나 구축코 등의 짧은 코 성형수술, 숨쉬기 힘들거나 외모적 개선을 위한 흰 코 성형수술, 선천성 기형코 등 재건목적의 성형수술, 뼈 띠 성형(필러나 실 등의 재료를 이용하는 간단한 시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용비술



| 시술재료⁴⁾ |

1) 자가 조직

자가조직은 비교적 안전하며, 거부감 또는 염증 위험 적음, 다만 수술부위 외 추가 절개부위가 생기며, 활용할 수 있는 용량 제한이 많음.

- 귀연골 : 코 끝 모양 보강시 적합
- 비중격 연골 : 직진성이 있어서 코끝 연골조작을 통한 코끝 연장등에 적합
- 늑연골 : 다량 채취 가능하나, 휨 변형(warping)위험성
- 자가진피 : 이식 후 생착 과정에서 일부 흡수 일어남.
- 자기뼈 : 재건목적으로 적합함.

2) 동종 보형물질

- 인조피부 : 면역학적 거부반응 적음(조직친화력), 면역반응을 최소화 하여 자가조직 대체 물질로 이용
- 타인연골 : 면역반응을 최소화 하여 자가조직 대체 물질로 이용, 흡수율이 개인차가 있음.

3) 이종 보형물질

- 실리콘 : 형태 형성 용이, 수십 년 동안 사용으로 안정성 일부 확보되어 있음. 움직이거나 피부가 얇은 경우 비취 보일 수 있음.
- 고어텍스 : 세포가 보형물내로 이동하여 움직임이 적음. 재수술시 출혈, 감염이 상대적으로 많음.
- 실리콘(고어실리) : 실리콘과 고어텍스의 장점을 동시에 이용하여 움직임이 덜하고 모양을 맞추기가 쉬우나, 제거시 난이도가 높음.
- 메드포어 : 코 지주 역할에 적합하나, 딱딱한 단점이 있음.
- 필러 : 시술의 용이성, 형태를 직접 수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소성, 일부 가역성 있음. 단점으로는 일반적으로 효과 지속 기간이 짧고(필러의 종류에 따라 다름), 혈관을 막아서 혈관 막힘 병변 초래 가능성이 있음.

4)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Main.do>)

코 성형 수술 의료분쟁 대처방안

1) 충분한 사전 상담과 안내

- 환자와의 상담 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환자에게 인식시키고, 다양한 수술방법을 제시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성형수술, 특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목적 및 수술방법, 후유증 및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법과 더불어 수술 후 관리방법까지 미리 설명을 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2) 환자의 주요 불만사항에 대한 파악과 성실한 설명

- 주관적 불만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상태 및 수술 전 설명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주요 불만 사항은 비대칭, 움직임, 비쳐 보이는 증상, 염증, 모양에 대한 불만족 등임. 비대칭의 원인이 얼굴 골격이 돌아가 있는 안면부 비대칭(hemifacial atrophy etc.)이 있었던 경우는 수술적 한계에 대한 설명이 중요함. 이외에도 비골의 변형이 동반된 비대칭도 마찬가지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미용수술 한계를 인지하여야 갈등상황이 줄어 들 수 있음. 비쳐 보이는 현상 등은 간단한 술기로 해결할 수 있으며, 염증 발생 시에는 간과하지 말고 즉각 항생제 투여나 이물질 제거 등의 조사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함. 모양에 대한 불만족은 환자나 의사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관점의 차이인데 보편타당한 설명이 수술 전 후에 있었다면 해결이 용이 할 수 있음.

3) 불만족 발생 시 이후 진행과정에 대한 사전 안내

- 시술 결과에 대한 불만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코 비대칭의 경우는 교정시술에 따라 일부 교정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후 시술방법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에 명기하고 환자에게도 사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면

1 광대뼈 축소술 및 코성형술 후 수술부위 감염 등 발생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팔자주름 상담을 위해 내원하였으나, 광대뼈 및 코수술 권유받아 광대뼈 축소술 및 코성형술 받았으나 이후 수술 시 절개창 부위에 감염 및 비중격 천공 등 발생하여 조정 신청함.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것은 신청인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염증 발생 후에도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여 과실은 없다고 의견 제시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코성형술 후 비중격이 천공된 것은 수술 상 과실로 보임.

염증은 수술 및 보형물 삽입 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균 배양 결과 없이 임상적 경험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하여 치료기간이 지연되었을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법률적 검토 |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기술이 되어있는 동의서에 신청인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인에게 발생한 증상과 관련된 설명이 없어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7천만원을 청구함.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천7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결정함.

2 양악수술 후 감각이상 및 부비동염 발생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양악수술을 시행 받은 후 하악 안면부의 감각이상 및 부비동염 발생한 것에 대해 조정 신청함.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수술시 신경의 직접적인 손상은 없었으며 부비동염의 발생은 수술자의 과실이나 과점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부 발생하는 것이라는 의견 제시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시상절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삼차신경의 분지 중 감각신경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좌측 하구순부의 감각장애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법률적 검토 |

수술동의서를 참조로 할 때,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 감각이상, 안면 신경손상, 출혈, 염증, 감염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설명은 비교적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됨.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8천6백만원을 청구함.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천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합의함.

3 사각턱 시술, 안면거상술 등 미용시술 후 불만족

사건개요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인(러시아 국적)인 신청인(환자)이 미용성형 시술(사각턱 성형술, 하안검 성형술, 코 성형술, 목 부위 지방흡입술, 자가지방주입술, 안면거상술 등) 후 흉터, 안면부 통증, 비대칭, 효과 불만족 등 호소하며 조정신청함.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조정신청 시점은 시술 후 3개월 내외 경과하였으므로 경과관찰 시기이며, 시술결과에 있어 최선을 다해 상담하였다고 의견 제시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사각턱성형술, 용비술, 자가지방주입술 등의 수술 시 좌우비대칭을 초래할 가능성 높음. 완벽한 비대칭성을 교정하는 것 자체가 용이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경우 수술 후 나타난 비대칭성 정도는 과실로 보기 어려운 수준임.

코막힘 증상과 수술과의 연관성 코막힘 증상은 비익절제술이 시행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응 기간이 경과하여도 지속적으로 코막힘 증상이 있을 시 비공확장을 위한 추가 수술(연골 지춥대 삽입술 등)이 필요할 수 있음.

수술 동의서

수술명 : 000
 성명 : 000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본인은 000 성형외과의원(병원)에서 시행되는 본인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본 수술에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수술하는데 동의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성명 : 000 (서명)

〈 인쇄된 문자로만 표시된 수술 동의서 예 〉

| 법률적 검토 |

신청인은 러시아인이며 한국어로 소통이 불가능하며 영어로 의사소통도 능하지 않은 자이므로, 피신청인으로서 통역을 이용하는 등 신청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어야 함. 그러나 사각턱 성형술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및 합병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수술 동의서에는 사각턱 성형술 후 비대칭, 턱 관절 운동의 어려움, 신경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한글로 작성된 수술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하였으리라고 불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판단됨.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1천2백만원을 청구함.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합의함.

외국인 성형 사례(설명 의무) 시사점

동의서를 포함한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이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

1. 포괄적 표현과 일관된 형식으로 인쇄된 문자로만 나열된 동의서에 일괄 서명하는 방식으로는 설명의 의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2. 각 시술 및 수술에 따라 개별적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 문자에 의한 설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개별적 설명에 대한 추가적 수기 기록 등이 있으면 바람직함.
3. 외국인의 경우 가능한 한 해당언어로 된 동의서 준비 또는 통역 대동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
4. 미용성형수술 환자, 특히 외국인환자의 경우 환자의 요구 및 편의상 많은 성형수술 동시시행 자제 필요.

4 안면부에 자가지방이식술 받은 후 피부괴사 발생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인하여 지방이식술(이마, 눈두덩이, 팔자, 턱 등)을 받은 후 오른쪽 이마 부위에 피부괴사 발생하여 조정 신청함.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안면자가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오른쪽 이마의 피부변색이 발생하였고 이는 지방이 피부로 가는 혈관을 막아 생긴 것으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부작용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의견 제시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지방이식술 시 동맥 폐쇄나 동맥내지방색전증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수술과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나, 수술 후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아 신청인의 증상이 악화되었음.

| 법률적 검토 |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 지방색전증, 피부괴사, 이로 인한 반흔 등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 사건 수술에 대한 설명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이루어졌고, 이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1천7백만원을 청구함.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결정함.

5 이마 용기술 후 상처 및 두통발생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실리콘 보형물에 의한 안면거상술(이마용기술) 후 함몰 흉터와 통증 야기를 주장하여 조정 신청함.

피신청인(의료기관)은 현재 함몰 흉터는 시술 합병증의 일종이며, 일정 시일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 의견 제시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이마 용기술에는 돋우어 주어야 할 부위와 정도를 진찰, 임상사진, 머리뼈계측방사선사진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결정해야하며, 실리콘 보형물과의 경계부는 완화(smoothing)해 주어야 표면이 매끄럽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소홀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수술 후 이마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골막하 박리가 아닌 피하 박리에 의한 보형물 삽입으로 판단됨.

수술 후 이마 물질 및 흉터는 보형물을 삽입하기 위해 피하 박리 시 너무 얇게 거상하여 혈행장애로 인해 발생한 피부괴사로 추정. 두통 증상은 보형물 삽입과정에서 전두부의 감각신경이 자극을 받은 결과로 판단됨.

| 법률적 검토 |

시술관련 동의서의 부재, 그 외 시술을 함에 있어 혈종 발생 가능성, 시술 부위가 괴사될 수 있는 점 등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설명의무 부족으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기왕·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3백만원을 청구함.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결정함.

6 CO₂ 레이저로 안면부의 점 제거 한 후 함몰 반흔 발생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CO₂ 레이저로 안면부의 점을 제거 한 후 함몰 반흔이 발생한 것에 대해 조정 신청함.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흉터는 레이저를 이용한 점 제거 시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의료과실은 없다는 의견 제시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함몰 반흔은 레이저가 과도하게 조사되었거나 모반이 피부 깊은 층까지 침범해 있는 경우 시술시 깊은 진피층까지 손상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음.

신청인에게 발생한 함몰 반흔은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임.

| 법률적 검토 |

수술 전 신청인에게 수술과 관련하여 필요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

환자가 의료침습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설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면제되나, 이 사건 의료행위 과정에서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설명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음.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향후치료비로 1백만원을 청구함.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결정함.

가슴

1 가슴 확대술 후 화상, 리플링 발생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가슴확대수술 후 한쪽 종아리에 3도 화상 발생, 왼쪽 가슴 재수술 후 왼쪽 팔, 손 신경 손상 및 재수술한 왼쪽 가슴이 리플링⁵⁾ 현상과 더블라인이 발생하여 조정 신청함.

피신청인은 수술상의 과실을 추정할 만한 증상은 없으며, 수술 후 합병증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신청인에게 발생한 유방의 이중 주름과 유방내측부의 리플링 현상, 왼쪽 팔 저림 현상 등은 유방확대수술 후 발생가능한 부작용으로 슬기가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수술과정에서 하지에 3도 화상

5) 리플링(rippling) : 물결 또는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의미하며, 리플링 현상이란 몸속의 보형물이 접히고 구겨지면서 꾸룩꾸룩 소리나 촉감이 느껴지는 것을 말함. 마르고 피부가 얇은 사람, 유방조직이 얇은 사람에게 잘 생기며, 연부조직이 보형물을 충분히 덮어 주지 못해 생기는 경우 잘 생김.

이 발생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수술과정 중 보비플레이트에 의한 화상으로 판단됨.

제출된 동의서상 유방확대수술에 있어 필요한 설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액와부 절개에 의한 유방확대수술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감각 신경 손상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였음. 2차 수술의 경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동의서 자체가 1차 수술 동의서에 날짜를 추가하여 서명되어 있는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 법률적 검토 |

피신청인의 과실로 신청인은 하지에 3도 화상을 입어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사건의 시술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신청인의 치료행위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됨.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기왕·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8천5백만원을 청구함.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결정함.

2 가슴 지방 이식술 후 석회화 발생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지방이식수술을 받고 석회화가 진행되어 타병원에서 지방제거수술을 받은 후 양쪽 가슴이 함몰되고, 흉터가 남아 정신적 스트레스 및 우울증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며 조정신청함.

피신청인은 유방지방이식수술 후 좌측 가슴에 작은 종양이 만져졌으나 별다른 증상이 없어 경과관찰을 하였고, 천자와 흡인 후 추가적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원조치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지방 주입 부위는 유방부 피하지방층, 근육 위층 및 근육층 등 유방실질 조직층이 아닌 유방부 여러 조직층에 골고루 주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앙지방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하조직층에만 주입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보관된 지방의 주입 및 부적절한 위치에 주입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차를 두고 시행하였다고 하나 주입방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법률적 검토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허벅지·겨드랑이에서 지방을 흡입하여 가슴 및 안면에 지방이식을 한 사실, 신청인의 얼굴 부위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 일반적으로 주입된 지방이 인체 조직의 여러 층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고 특정 부위에 다량의 지방이 주입됨으로서 주입된 다량의 지방이 혈류 부족으로 중앙지방괴사 과정을 거쳐 섬유화·석회화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사실, 주입된 지방이 괴사되는 일은 비교적 흔하지만 석회화되어 종괴가 커지는 현상은 드문 일인 사실,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후 지방이식한 부위에서 석회화가 발견되어 양측 유방 부분 종괴 절제술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사건 시술상 요구되는 앞서 살핀 지방주입부위, 방법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신청인에게 석회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기왕·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청구함.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결정함.

가슴 확대수술 추가 사례 - 보형물 위치 이탈

신청인(환자)은 좌측 유방의 이중 풍선 변형 및 보형물의 측방변위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에 대해 집도 의사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직접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병원 직원이 수술에 대한 간단한 개요 및 결과만을 설명하고 수술에 임함으로써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상담직원이 수술의 개요, 비용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 후에는 의사가 직접 환자와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함. 유방 모양이 자리 잡는 과정은 수술 후 보정속옷을 착용하는 것으로 완료되는데, 신청인이 예쁜 속옷을 착용하고 싶다고 문의하여 보정속옷을 잘 착용하라고 설명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보정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악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과정 중 과도하게 좌측 유방을 박리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 및 수술 후 발생한 유방 모양의 변형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유방 모양 변형 등의 악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검토된 사례.

관련 의학 정보 - 유방확대술(augmentation mammoplasty)

| 수술 전 주의사항 |

- 출혈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아스피린, 항응고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 수술 2-4주 전부터 복용을 중단.
- 월경주기의 후반 2주간, 유방의 충혈이 동반되는 시기에는 수술을 지양.

| 수술 방법 |

1) 절개 방법

- 겨드랑이 절개법, 유방밑 주름 절개법, 유륜주위 절개법, 배꼽가장자리 절개법이 있음.

2) 보형물의 위치

- 가슴근(대흉근) 아래에 보형물을 삽입하여, 특히 마른 사람에서 보형물을 근육으로 충분히 덮어 자연스러운 유방모양을 만들 수 있음.
- 유방 조직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유방조직과 가슴근 사이에 보형물을 넣을 수 있음.
- 이중평면 위치는 위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형물의 상부는 가슴근 아래에 위치하고 하부는 유방조직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유방하부의 모양이 자연스러워지며, 가슴근으로 인한 보형물의 변형을 막을 수 있음.

| 수술 후 주의사항 |

수술 후 4~7일 동안 환자는 육체적인 노동을 피하고 쉬는 것을 권장하며, 약 1달까지는 과격한 운동을 피하여야 함. 수술 후 보정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속옷 종류와 기간은 환자의 상태와 수술 과정에 맞춰서 결정함. 표면이 매끈한 보형물인 경우 수술 후 피막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 마사지를 할 수 있음.

| 부작용 |

1) 피막 구축

피막은 정상적으로 유방 보형물 주변에 형성되는데, 이 피막이 두꺼워지면서 유방이 단단하게 만져지고, 모양이 일그러지며 통증을 일으킴. 유방 확대술 후 재수술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통 1년 안에 나타나지만 장시간이 지난 뒤에도 발생할 수 있음.

2) 유방 보형물의 위치 변동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 움직임, 보형물의 무게, 외부 압력에 의해 나타날 수 있음.

3) 보형물의 주름 및 출렁거림

보형물의 주름과 출렁임이 겉에서 보이는 것으로, 식염수가 덜 채워진 경우나 표면이 거친 보형물을 유방 조직 아래에 넣은 경우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치료로는 보형물의 종류나 위치를 바꾸거나 보형물 위를 주변 조직이나 지방으로 덮어주는 방법이 있음.

4) 기타

혈종이나 감염, 보형물 노출 및 터짐, 유방 감각이상 등

전신

1 2차 지방흡입술 후 피부표면 형태 변화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지방 흡입 및 이식 시술 후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흉터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조정 신청함.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이 사건 시술 전 다른 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을 받았으나 굴곡이 발생하여 있었고, 살이 많이 찌있는 상태였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교정되었다는 의견 제시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지방흡입 후 복부, 상완부 및 견갑부의 총 피하 지방층의 두께는 감소하였으나, 피부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증상은 지방흡입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며, 이는 불균등한 지방흡입, 얇은 피부 및 지방층의 과도한 흡입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서는 추가적인 지방흡입술이나 함몰 부위의 지방이식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2차 시술은 통상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권장되나, 지방이식을 수차례 시행하더라도 함몰된 부위를 편평하게 복구하기는 쉽지 않으며, 지방 상부에 있는 잉여 피부가 원래 모양으로 수축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음.

상완부 지방흡인의 경우 부위에 따른 적당량의 흡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요구되며, 지방흡입으로 인하여 지방층이 섬유화되기 때문에 2차 지방흡입술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 전문적 지식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는 기술적 미숙으로 인하여 지방흡입술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법률적 검토 |

본 사건의 의료행위는 통상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의 범위 이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피신청인은 지방흡입술 시행 시 요구되는 피부 및 지방층의 두께에 따른 적절한 양의 지방을 고르게 흡입시켜야 하는 등의 기본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기왕·향후 치료비, 간병비등을 포함하여, 6백만원을 청구함.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결정함.

비수술 방법

필러, 보톡스 등

1 상안검 필러주입술 외상성 백내장 및 유리체 혼탁 발생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상안검 꺼짐으로 필러주입 시술 후 외상성 백내장 및 유리체 혼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수술을 받은 이후 정신과적 질환(적응장애, 우울증), 발목 부상 및 후경골근건기능장애⁶⁾도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조정 신청함.

피신청인(의료기관)은 필러 주입 시술을 할 때에 환자는 눈을 감고 정면을 주시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눈을 감고 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수정체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의견 제시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필러 주입 시술 시 주사바늘에 의한 우안 수정체의 손상이 발생하여 외상성백내장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

6) 후경골근건 기능장애 : 근골격계질환에서 흔한 병으로, 발과 발목을 둘러싸는 조직의 변화가 나타남. 하퇴의 안쪽면, 발목, 발꿈치, 발의 안쪽면의 통증 등이 나타나며, 기능장애로 발가락을 앞으로 내밀 때 통증과 보행 장애 증상 등을 보임.

고, 이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나 예상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주를 넘어선 과실로 판단됨.

안구손상으로 인한 수술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발목 부상은 그 인과관계를 명백히 밝히기는 어렵고, 후경골근건기능장애의 개연성은 충분하지 않음.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1억5천만원을 청구함.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결정함.

2 필러 및 보톡스 시술 중 실명 발생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필러 주입술, 턱 부위 보톡스 시술 중 우측 안구 통증, 편측(우측) 실명 발생하여 조정신청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혈관외의 연부 조직층 안으로 주입되어야 할 필러의 일부가 필러 주사 시 미간부에 있는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을 이어주는 혈관들 내로 주입됨으로써 색전증 발생, 색전증에 의해 중심망막동맥이 폐쇄(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되어 우안 실명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기왕·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2억5천만원을 청구함.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합의함.

3 안면부에 보툴리눔 독소 시술법 후 봉소염발생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이마·미간·눈가주름에 보툴리눔 독소 시술(보톡스 주사)을 받고 안면부에 봉소염이 발생하여 조정 신청함.

피신청인(의료기관)은 보툴리눔 독소 시술법은 안전하고 간단한 시술로 이로 인한 염증은 드물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본 시술 때문에 발생한 안면부 봉소염인지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신청인에게서 사전에 이마 보형물 삽입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의견 제시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안면부에 봉소염이 발생한 원인은 보툴리눔 독소 시술 시 병원 감염(상처배양검사에서 병원 감염의 중요한 원인균 검출)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에 삽입된 보형물이 병원감염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임.

| 법률적 검토 |

시술관련 동의서의 부재, 그 외 ‘보톡스 시술 후 안내사항’이라는 제목의 안내서에는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염증에 관하여 매우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기에,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특별손해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1천5백만원을 청구함.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백7십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결정함.

4 자가 지방 주입술 후 뇌졸중 및 실명 발생

기타 의료분쟁 사례

재건 목적 등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의료기관에서 안면 자가 지방 주입술 중 색전증 발생 및 왼쪽 눈의 실명(장애 6급진단)과 뇌졸중 발생하여 조정신청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안면 지방이식 수술 후 지방 색전증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이지만, 여러 논문을 통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색전증의 부작용 및 후유증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가 인지하고, 수술 전 병력에서 혈전 발생의 가능성 여부 및 기저 질환의 확인과 뇌-심혈관 질환 여부 등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야 함.

지방색전증 이상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 처치 및 전문적인 치료가 단시간 내에 시작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본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수술과정과 다르게 지방 주입부위의 국소적 안색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고, 수술 후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환자 상태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점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 법률적 검토 |

수술 전 환자에게 지방 색전증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반드시 명기함으로써, 환자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국소적 안색변화가 있었다면 시술을 중지하고 발생원인 파악이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볼 것임.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기왕·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1억원을 청구함.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합의함.

1 심부열상을 단순한 피부열상으로 진단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수지 열상부위에 뼈와 인대가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고 1차 봉합술을 받았으나 이후 타병원에서 수상 당시 손상된 건과 신경손상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재수술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조정 신청함.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열린 상처에 대해 눈으로 굴곡건이 손상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학적검사 상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경과관찰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의로 외래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의견 제시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수지열상으로 1차 봉합술을 받았으나, 신청 외 병원에서 심수지 굴건, 천수지 굴건 파열을 진단 받았으며, 이는 수상 당시 손상된 것으로 이에 대한 건 봉합술이 시행되지 않아 치료방법의 선택 및 술기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됨.

| 법률적 검토 |

치료의 목적과 방법,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 발생 가능한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동의서 등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수술 전 진찰과정도 소홀하여 진료의사의 주의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5백여만원을 청구함.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95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합의함.

2 근피부유리피판술 후 피판조직 괴사 및 감염 발생

사건개요

신청인(환자)은 좌측 둔부 종양에 대한 절제술 및 피판술 후 괴사 및 감염 등이 발생되고, 피신청인이 수술 후 자세 지도를 부적절하게 하여 치료 지연된 것에 대하여 조정 신청함.

피신청인(의료기관)은 피판의 문제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감염 또한 예측 불가능한 내성균의 발생이 원인이 된 것이며, 신청인이 거머리 치료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의견 제시함.

사건검토

| 의학적 판단 |

근피부유리피판술⁷⁾ 후 피판 부위에 괴사가 발생하는 원인은 혈관압박, 혈관부전 등으로 혈전에 의한 폐쇄가 흔히 발생되며,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피판 울혈 시 순환부전으로 인해 괴사가 발생하고 울혈상태의 피판 구제를 위해 사용한 거머리치료 시 2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수술 부위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여 혈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누운 자세가 이로울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혈관(정맥)이 압박되면서 울혈이 더욱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담당 의료진의 자세 지도가 적절하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자세 지도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책임 문제와 성실진료의무 위반의 책임이 고려됨.

7) 근피부유리피판술(musculocutaneous free flap) : 유리피판술이란 공여부에서 여러 가지 조직을 혈관줄기가 붙은 채로 완전히 떼 다음, 수혜부에 있는 혈관에 미세혈관연결을 해주는 수술. 신체 어디에서나 다양한 조직의 유리피판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근육과 피부를 이와 같이 옮겨주는 것을 근피부유리피판술이라고 명명함. 주변 조직으로 재건이 힘들 경우, 멀리 떨어진 조직으로 재건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나, 연결한 혈관이 막히는 경우 옮긴 조직이 괴사될 수 있음.

| 결 과 |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5천만원을 청구함.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결정함.

성형외과 의료분쟁 예방 시사점

III

1. 성형외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환자
2. 성형외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의료기관
3. 성형외과 의료분쟁 법률적 해석

별첨 1. 미용성형수술 및 시술 점검목록

별첨 2. 관련 용어

1 성형외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환자

1. 지나친 기대 금물

- 성형수술 후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광고 및 홍보용 수술 전·후 사진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거나, 수술 효과에 대한 환상적 기대는 자제하여야 함.

2.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한 결정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므로 수술하고자 하는 부위에 관한 정보(수술 방법, 기대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치료기간)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설명을 구한 뒤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환자의 충분한 수술 이해 및 신중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함.
- 반복적인 성형수술의 경우 기대한 결과를 더욱 얻기 힘들어지므로, 초기 신중한 선택과 결정 및 치료 예후를 위한 사후관리가 중요함.

3. 의무기록, 사진 등 자료 준비

- 수술 전·후 사진은 수술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한 즉시 진료기록 사본을 준비.

4. 수술동의서의 구체적 내용 확인 후 서명

- 수술동의서의 내용은 향후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 측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수술동의서에 수술부위와 내용 및 부작용, 후유증 등에 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이 명기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에 동의서에 서명할 것이 요구됨.

5. 수술 집도위에 대한 확인

- 수술 결정전 수술을 직접 집도할 의사와 직접 충분한 면담을 하며, 수술시 참여하는 집도위가 다수인 경우에 누가 참여하며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이해하도록 함.

2 성형외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의료기관

1. 신뢰관계 형성

- 환자와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수술의 설명과 결정에 있어서는 담당의사에 의한 환자 직접 면담과 동의서 작성이 필요함.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지속적 신뢰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함.
- 초기 상담의 근본적인 목적은 환자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함.
- 의사의 관점이 아닌 환자의 관점에서 환자가 원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려는 자세가 필요함.

2. 성실한 설명의무 이행

- 설명의 의무는 의료인의 법적 의무(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이나, 간과하기 쉬운 경향이 있음. 특히 외국인 환자의 경우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실히 설명하여야 하고, 의무기록도 성실히 남겨야 함.

※ 보건의료기본법 제 12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성형외과 시술부위에 따른 각각의 구체적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을 담은 동의서를 마련해두고, 환자로부터 해당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의료분쟁 발생시 이로써 수술의 명확한 내용을 입증하고, 설명의무 위반 문제를 피할 수 있음.
-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3호, 2016.6.22. 개정)을 활용하는 방안 고려

3. 수술 전 사전 대처

- 지나친 환상적 기대 자제 및 현실적 목표 제시, 가능한 한 단순한 수술기법 이용
- 심미적 불만족 등 예상되는 의료분쟁에 대한 사전 대처 필요
- 수술 후 관리과정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이행을 위한 조언 필요
- 미용 목적의 경우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기대하거나 약속한 미용적 목적의 달성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

4. 꼼꼼한 의무기록 및 동의서 등의 작성

- 일상적인 진료, 환자의 요구 수용 등 작은 부분부터 꼼꼼히 살펴 의료사고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진료기록을 성실하게 작성, 설명의 의무, 의료법상 진료기록 의무 등의 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시행에 대해 대비하여야 함.
- 동일한 각도 및 조건 하에서 수술 전 및 수술 후 사진 기록이 중요함.
- 의무기록은 진하고 정확하게, 약어가 아닌 보편적 의학용어 사용과 약식 도식도 활용 등을 고려.
- 시술 또는 수술 방법들의 장단점, 부작용 및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한 시술 또는 수술동의서 작성. 의사 본인이 설명 후 환자의 날인 받을 것. 일괄 인쇄된 문자로 작성된 동의서의 경우 강조할 점 별도 명기, 기재가 어려운 경우 도식도 활용 등 세세한 설명과 기록 필요함.

5. 외국인 환자 응대

- 외국인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통역이나 환자의 자국어로 번역된 수술동의서 등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 적어도 수술 당사자가 수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
- 의료중재원에서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절차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진료계약서에 의료중재원을 통한 해결방법을 명시(조정중재절차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3 성형외과 의료분쟁 법률적 해석

1. 주의 의무 관련 판례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반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 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 의료종사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부산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나 10749 판결).

주의의무 판례를 통해 살펴본 시사점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의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던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의사는 그 기준에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2. 설명의 의무 관련 판례

-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 대해 침습을 동반하는 의료행위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환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예정되어 있는 의료행위의 내용, 목적, 결과 등에 관해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고,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실시하려고 함에 있어서는 의사가 환자에 대해 당해 질병의 진단, 실시 예정인 수술의 내용, 수술에 따른 위험성, 달리 선택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으면 그 내용과 이해득실, 수술의 예후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함(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판결).
-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됨(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 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

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 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함(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설명의 의무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본 시사점
성형외과 시술도 대표적인 침습적 의료행위 중 하나이고, 특히 치료목적의 일반적인 다른 수술과 달리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다수이므로, 더더욱 환자와의 충분한 사전상담이 필요하고, 수술 전 수술부위, 방법, 후유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개개의 수술에 맞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수술동의서를 마련해 두어서 수술 전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3. 법리적 관점에 대한 판례

1) 의사의 재량권에 대한 관점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2) 의사 재량의 한계에 대한 관점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3) 외모 추상에 관한 관점의 특수성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

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며,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기 위한 추상의 정도에 관해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 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음(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4. 기타 법리적 관점

성형외과 진료계약상 의무

- 신청인이 기대하였던 시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진료계약의 성격이 문제됨. 살피건대 진료계약상의 의무는 결과의 달성(질병의 치유) 자체를 채무의 내용으로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결과를 향하여 최선의 진료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단채무라고 할 수 있지만⁸⁾, 성형외과는 일반 의료행위가 수단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효과나 결과의 달성 자체를 채무의 내용으로 하는 결과채무로서의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음⁹⁾.
- 성형수술, 특히 미용 성형수술은 최선의 진료행위뿐 아니라, 원하는 결과가 달성됐을 때 비로소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난점이 있음.

8) 김선중,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육법사(2012.9.15),P.83.
9) 김선중,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육법사(2012.9.15),P.122.

별첨 1¹⁰⁾

<미용성형수술>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임상 의사]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들

- 누가 수술을 하는가?
-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성형외과 전문의인가?
- 이 수술과 관련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았는가?
- 얼마나 자주 해당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가?

[비용]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들

- 의사와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가?
- 수술 후 필요한 약제나 보조기구 등을 포함한 비용은 얼마인가?
-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치료에 대한 비용을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가?
그 비용은 얼마인가?
- 환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수술을 끝까지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수술]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들

- 수술이 나에게 적합한가?
-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해당 수술 외에도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가?

- 수술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가?
- 수술은 통증을 유발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마취 방법과 마취제가 사용되는가?
- 사용되는 장비는 소독되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는가?
- 수술에 어떠한 위험이 따르는가?
- 이 의원(병원)에서 해당 수술의 합병증 발생 비율과 수술 성공 비율은 어떠한가?
- “수술 전” 및 “수술 후” 사진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가?
- 환자를 위한 “수술 전 후” 사진이 의원(병원)에 비치되어 있는가?
- 수술 받은 다른 사람(환자)들과 상담할 수 있는가?

[수술 후] 상태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 수술 후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
- 수술 후에 진통제가 필요한가?
- 수술 후에 붓거나 멍이 생기는가? 생긴다면 치료 가능한가?
- 수술 후에 일상적인 활동으로는 언제 복귀 가능한가?
- 언제부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가?
- 수술결과는 언제, 어떤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
- 수술결과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 수술 후 수개월 후라도 상담이 필요하다면 수술한 의사를 만날 수 있는가?
- 수술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수술기록]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 나의 수술내용은 기록되는가? 기록된다면 어떠한 형태로 기록되는가?
- 나의 기록이나 사진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가?
- 사진을 포함하여 나의 기록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 전에 나의 승인을 받는 것인가?
- 나의 수술기록 사본을 소유할 수 있는가?
- 수술이 끝난 후 의원(병원)은 수술 관련기록을 얼마동안 보관하는가?
- 수술한 의원(병원)이 폐업한 경우 나의 수술기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10) 미용성형수술 및 시술 점검목록(check list) (임태환 외,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대한성형외과학회, 미용성형수술 이용자 정보집(2013. 12. 31) : P. 9~11)

<비수술 미용성형시술>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시술 제공자]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들

- 누가 시술을 하는가?
- 시술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 시술자는 해당 시술과 관련하여 얼마동안 훈련을 받았고 경험을 쌓았는가?
- 시술자는 해당 시술을 얼마나 자주 시행하고 있는가?

[시술]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들

- 해당 시술이 나에게 적합한가?
- 시술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가?
- 시술은 통증을 유발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마취제가 사용되는가?
- 사용되는 장비는 소독되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는가?
- 시술재료는 어떤 것이고 이름과 성분은 무엇인가?
- 피부 필러(filler)의 경우,
 - 필러의 소재는 무엇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인가?
 - 필러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술 전에 테스트를 받는가?
- 어떠한 위험이 따르는가?
-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다른 시술이 있는가?
- 시술 이용자를 위한 “시술 전 후” 사진이 의원(병원)에 비치되어 있는가?

[시술 후] 상태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 시술 후에 어떤 유형의 관리가 필요한가?
- 시술 후에 진통제가 필요한가?
- 시술 후에 붓거나 멍이 생기는가? 생긴다면 치료가 가능한가?
- 시술의 결과를 언제, 어떤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
- 시술 후에 결과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료가 있는가? 이는 비용에 포함되는가?
- 결과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 시술 후 치료는 몇 차례 이루어지는가?
- 시술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 나의 시술 전후 사진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 전에 나의 승인을 받을 것인가?
- 나의 시술내용은 기록되는가? 기록된다면 어떤 형태로 기록되는가?
- 시술한 의원(병원)이 폐업한 경우 나의 수술기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비용]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들

- 시술 후 필요한 약제나 보조기구 등을 포함한 비용은 얼마인가?
- 시술 이용자의 변심으로 시술을 끝까지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그 시술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병원이 폐업한 경우 나의 수술기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별첨 2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용어

◆ 의료사고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이하, 의료분쟁조정법).

◆ 의료분쟁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함(「의료분쟁조정법」 제2조제2호).

◆ 조정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 중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분쟁조정법」 제44조).

◆ 합의

조정절차 중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조정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분쟁조정법」 제37조).

◆ 조정성립/불성립

조 정부는 조정절차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해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조정결정을 함. 이 조정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조정 성립이라고 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의할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이라 하며,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부조정 결정)

조 정부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내용이 이유 없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의료분쟁조정법」 제39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

◆ 신의성실의 원칙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함(「의료분쟁조정법」 제4조).